

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의원입니다.

□ ‘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
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
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
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한
근거와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
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
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조례 개정 취지처럼,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